

과업내용서

[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전시기획, 제작 및 설치 용역]

자체 보안성 검토 필		
분류	일반	안전보안실장(인)

2026. 8.

과업내용서

[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전시기획, 제작 및 설치 용역]

1 과업개요

□ 과업명

-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전시기획, 제작 및 설치 용역

□ 과업목적

- 행정안전부 주최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사 부스 제작 및 운영을 통한 대국민 한국공항공사 안전 이미지 제고 및 안전 방침·추진사업 홍보

□ 과업기간

- 계약일로부터 2026. 9. 4.(금) 철거 시까지

□ 과업대상

- 행사명 :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
- 행사기간 : '26. 9. 2.(수) ~ 9. 4.(금)
- 설치장소 :
- 설치규모 : 독립부스 4부스(36㎡, 6m×6m)
- 주요 과업내용
 - 한국공항공사 부스 전시기획 및 부스, 관련 그래픽 디자인
 - 부스설계 및 시공
 - 기타 소요기기 임대 등 부스 설치 일체
 - 부스철거, 폐기물 처리 및 기타기기 회수
 - 용역 성과물 제출

□ 부스기획

- 공사 CI 지침서를 참고하여 한국공항공사 안전방침 및 분야별 안전 활동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

□ 부스 디자인 및 설치

- 디자인
 - 공사의 특징 및 전시 사항을 반영한 홍보부스 내·외부 디자인(조명, 그래픽 디자인, 간판 등)
 - 부스 내 미팅 공간
 - 리플렛, 홍보자료 등 비치할 위한 공간 마련
 - 물품 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
 - 관람객 체험형 이벤트를 위한 공간 마련
 - 자료 및 물품 보관용 창고 마련
 - 개방면에 따라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여 부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 * 행사 주관기관의 전시도 배치도 참고
- 비품 및 부대시설
 - 영상 송출을 위한 LED TV 임대
 - 부스 미팅 공간 내 테이블 및 의자 임대
 - 카탈로그 스탠드 등 추가로 필요한 비품 임대
- 부스설치 : 목공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, 4부스 규모에 맞게 설치

□ 부스 철거

-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주최 측의 운영지침 및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, 폐기물 처리 및 임대 기기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□ 일반사항

-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“한국공항공사”(이하 “공사”라 함)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.
-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, 발주기관 및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, 임의로 소유·활용할 수 없다.

□ 과업절차 및 방법

-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“과업착수계”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용역공정예정표
 - 2)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
 - 3) 투입인력 보안서약서
 - 4) 투입인력 신원보증서
 - 5)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
-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“용역완료계” 및 “성과품”을 제출해야 하며, 공사에서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.

□ 과업 계약변경 또는 해지

-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 - 과업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
 - 용역 수행 중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

-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필요한 경우
-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안전산업박람회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을 경우
 - 용역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-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
□ 안전보건 수준평가 ※ 양식 별도 첨부

-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“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”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를 공사가 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.
 - 최소등급 : B등급(70점) 이상
 - 제출서류 :
 - 1) 안전보건관리계획서
 - 2)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(최근 3년)
 - 3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(보유시)

□ 보안사항

- 본 과업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용역업체 대표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고,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 및 과업수행 완료 이후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용역업체 대표자와 용역

참여자 전원은 이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용역참여자 교체 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용역 종료 시 공사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 및 방치,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.